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튼튼개인MMF1호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운용전문인력 변경 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-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
효 력 발 생 일	2024년 02월 19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01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01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책임운용전문인력: 홍진선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다은	- 2024.02.0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동원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왕희지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01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01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책임운용전문인력: 홍진선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다은	- 2024.02.0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동원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왕희지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4.02.19: 운용전문인력 변경,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책임운용전문인력: 홍진선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김다은	- 2024.02.0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동원 *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왕희지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 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	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 - 투자신탁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

	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0.1134%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2.12.14)	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.해지될 수 있습니다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0.1697%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6등급(매우 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3.12.14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1) ~ 2) (생략) 가. (생략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	1) ~ 2) (현행과 동일)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	가. 이익배분 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(이하 생략) 나. (생략)	가. 이익배분 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(현행과 동일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2.01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	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 (1) (생략) (2) 주요업무 1) (생략) 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생략)	가. 신탁회사(신탁업자) (1) (현행과 동일) (2) 주요업무 1) (현행과 동일) 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현행과 동일)

		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‣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(이하 생략) 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 -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☏ 02-2180-0400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www.shinhanaitas.com (2) (생략) 다. ~ 라. (생략)	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‣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- 주소 및 연락처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☏ 02-2168-0400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www.shinhanfundpartners.com (2) (현행과 동일) 다. ~ 라. (현행과 동일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	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►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) 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►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	-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►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) -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►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

		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생략)	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현행과 동일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	가. (생략) 나. 수시공시 (1) (생략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10. (생략) (3) ~ (4) (생략)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수시공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7. (현행과 동일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10. (현행과 동일) (3) ~ (4) (현행과 동일)

<끝>.